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목표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운용전환 후 비교지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08월 1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현행과 동일) 3.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제3조제4항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3.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생략) 2.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형 전환일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2.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형 전환일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추가>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전환일 이후 0%)</td></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전환일 이후 60% 이상)</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추가>

(3) 비교지수(Benchmark)
<table>
<tr><td>설정일 이후 목표수익률 달성 전까지</td><td>MSCI Europe *95% + call 5%</td></tr>
<tr><td>채권형으로 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td><td>KIS국공채시장지수3M~10Y</td></tr>
</table>
※ (생략) <추가> (생략)
</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th><th>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td></tr>
</table>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전환일 이후 0%)</td></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전환일 이후 60% 이상)</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채권</td><td>60% 이상</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table>
<tr><td>설정일 이후 목표수익률 달성 전까지</td><td>MSCI Europe *95% + call 5%</td></tr>
<tr><td>채권형으로 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td><td>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td></tr>
</table>
※ (생략) (전환일 이후) 이 집합투자기구는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생략)</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td></tr></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td><td>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 (전환일 이후 0%)</td></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 (전환일 이후 60% 이상)</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하나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주 1) 비교지수 : MSCI Europe *95% + call 5%, (운용전환일 이후)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td><td>[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주 1) 비교지수 : MSCI Europe *95% + call 5%, (운용전환일 이후)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상기의 (운용전환일 이후)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8월 15일까지는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 기준으로</td></tr>
</table>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08월 16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운용전환 후 비교지수 변경</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60% 이상 (전환일 이후 0%)</td></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 (전환일 이후 60% 이상)</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 rowspan="2">하나 UBS 파워중기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tr><td>투자목</td><td>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적</td><td>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td><td></td><td></td><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내역</th></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td><td>(생략)</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내역</th></tr><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40% 이하</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별첨 1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비교지수(Benchmark)
<table><tr><td>설정일 이후 목표수익률 달성 전까지</td><td>MSCI Europe *95% + call 5%</td></tr><tr><td>채권형으로 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td><td>KIS국공채시장지수3M~10Y</td></tr></table>
※ (생략) <추가> (생략)</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비교지수(Benchmark)
<table><tr><td>설정일 이후 목표수익률 달성 전까지</td><td>MSCI Europe *95% + call 5%</td></tr><tr><td>채권형으로 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td><td>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td></tr></table>
※ (생략) (전환일 이후)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td></tr>
</table>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생략)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 1) 비교지수 : MSCI Europe *95% + call 5%, (운용전환일 이후) KIS 국공채시장지수 3M~10Y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 1) 비교지수 : MSCI Europe *95% + call 5%, (운용전환일 이후)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상기의 (운용전환일 이후) 비교지수는 2019 년 08 월 16 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 년 08 월 15 일까지는 KIS 국공채시장지수 3M~10Y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

		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08월 1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2.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나.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3) 비교지수(Benchmark)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td>
<td>
나.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td></tr>
</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td>
<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
</tr>
</table>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KIS국공채시장지수 3M~10Y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IS국공채시장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IS국공채시장지수를, 2019년 05월 13 ~ 2019년 08월 15일까지는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08월 16일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td><td>-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d>(생략)</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 rowspan="2">70% 이상</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r><td>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 금리 변동성을 활용한 장단기 Target 듀레이션 설정으로 초과수익 추구
- 펀더멘탈, 채권수급, 기타 신용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 적극적 Sector 배분 전략 실행</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별첨 1 참조)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 를
</td><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
</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td></tr>
</table>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별첨 1 참조)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 1) 비교지수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IS 국공채시장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 1)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IS국공채시장지수를, 2019년 05월 13 ~ 2019년 08월 15일까지는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가.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비교지수대비 주로 +/- 0.5 년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펀더멘탈, 수급, 정책등을 비교 분석하여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며, 비교지수가 중장기지수임을 감안하여 주로 2 년이상 중장기물에 투자하게 됩니다.

※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권관련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율의 변화가 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 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08월 1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현행과 동일) 3.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보수
(생략)</td><td>보수
(업데이트)</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td><td>50% 이상</td></tr>
</table></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td><td>50% 이상</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td></tr>
<tr><td>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미만</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u>[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u>
<추가>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추가>
</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td></tr>
<tr><td>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미만</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u>[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u>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채권</td><td>60% 이상</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able>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추가>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생략)
주1) 비교지수 :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52.5%)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04월 11
</td>
<td>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업데이트)
(주 1) 비교지수 : <u>(KRX300*47.5%)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52.5%)</u>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td>
</tr>
</table>

	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52.5%), 2018년 04월 12일부터 2018년 05월 10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KIS국공채권시장지수 * 52.5%),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52.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04월 1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52.5%), 2018년 04월 12일부터 2018년 05월 10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KIS국공채권시장지수 * 52.5%),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52.5%), 2019년 05월 13일부터 2019년 08월 15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52.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13%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9%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08월 16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 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이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td>50% 이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
(별첨 1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0% 이상</td></tr>
</table>
※ 비교지수 : (KRX300지수 * 47.5%)+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52.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RX300지수 * 47.5%)+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52.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u>[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td>50% 이상</td></tr>
</table>
※ 비교지수 : (KRX300지수 * 47.5%)+ (<u>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u>*52.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RX300 지수 * 47.5%)+ (<u>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 년)</u>*52.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u>[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td>
</tr>
</table>

	<추가>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13%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9%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 (KRX300*47.5%)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52.5%)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04월 1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52.5%), 2018년 04월 12일부터 2018년 05월 10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KIS국공채권시장지수 * 52.5%),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 1) 비교지수 : **(KRX300*47.5%)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52.5%)**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04월 11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52.5%), 2018년 04월 12일부터 2018년 05월 10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47.5%) + (KIS국공채권시장지수 * 52.5%),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52.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IS국공채시장지수*52.5%), 2019년 05월 13일부터 2019년 08월 15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RX300*47.5%) +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52.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생략)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삭제)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가.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비교지수대비 주로 +/- 0.5 년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펀더멘탈, 수급, 정책등을 비교 분석하여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며, 비교지수가 중장기지수임을 감안하여 주로 2 년이상 중장기물에 투자하게 됩니다.

※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권관련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율의 변화가 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가치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08월 1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현행과 동일) 3.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추가>

(2) 투자대상
<table>
<tr><th colspan="2">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 rowspan="2">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td><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r>
<tr><td>하나UBS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 colspan="2">유동성자산</td><td>10% 이하 *</td></tr>
</table>
</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th><th>투자목적</th></tr>
<tr><td>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td></tr>
</table>
(2) 투자대상
<table>
<tr><th colspan="2">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 rowspan="2">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td><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r>
<tr><td>하나UBS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 colspan="2">유동성자산</td><td>10%</td></tr>
</table>
</td></tr>
</table>

		이하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 **투자비율** 채권 / 60% 이상 어음 /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3) 비교지수 : (KOSPI*30%)+(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70%)	**(3) 비교지수 :** KOSPI*30% + 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70%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 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파워중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7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 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7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70% 수준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70% 수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1) 비교지수 : **(KOSPI*30%)+(KIS국공채시장지수3M~10Y*7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매경BP국공채1년지수*7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OSPI*3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7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매경 BP 국공채1년지수*70%), 2019년 05월 13일부터 2019년 08월 15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7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08월 16일 -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변경

<table>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r>
</table>

<추가></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r>
</table>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td></tr>
</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 colspan="2">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td><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d>(생략)</td></tr>
</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 colspan="2">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td><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이상</td><td>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생략)</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td>
<td>
<table>
<tr><td>이상</td><td><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td></td><td><u>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u></td></tr>
<tr><td></td><td>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
(별첨 1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수준</td></tr>
</table>
■ 비교지수 : KOSPI*30%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7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파워중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 + KIS 국공채시장지수3M~10Y*7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td>70% 수준</td></tr>
</table>
■ 비교지수 : KOSPI*30% + <u>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u>*7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 + <u>Customized 매경 BP 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u>*70%를 비교지수로 하고
</td>
</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별첨 1 참조)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 KOSPI*30% +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7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 년 05 월 13 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 년 05 월 12 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 + (매경 BP 국공채 1 년지수*7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 KOSPI*3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7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0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05월 12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 + (매경BP국공채1년지수*70%), 2019년 05월 13일부터 2019년 08월 15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30% + KIS국공채시장지수3M~10Y*7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환매조건부매수 또는 매도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가.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비교지수대비 주로 +/- 0.5 년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펀더멘탈, 수급, 정책등을 비교 분석하여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며, 비교지수가 중장기지수임을 감안하여 주로 2 년이상 중장기물에 투자하게 됩니다.

※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권관련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율의 변화가 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